

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(변경)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									
신청인	법인(단체)명												
	소재지	(전화번호:)											
	대표자 성명	(한글) (한자)				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					
	대표자 주소												
신청 내용	신청구분	[] 전문예술법인					[] 전문예술단체						
	예술단·공연장 등의 명칭												
	소재지 (예술단 등)	(전화번호:)											
법인 · 단체 현황	법인·단체 목적사업												
	법인·단체 성격	[] 재단법인			[] 사단법인			[] 임의단체					
	법인·단체 설립 등 기준일	설립연월일 (창단 또는 개관 공연·전시일)				사업자등록번호 (등록 연월일)				법인전환일 (등기 연월일)			
	예술단 등의 재무현황 ※①② 중 해당 기재 ※법인부설사는 독립 채산기준적용	복 식 ①	자산		부채		자본		최근 1년 수익		최근 1년 비용		
		단 식 ②	수입					지출					
	규 모 ※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	예술단 항목	명세		공연장 항목		명세		전시 관련 항목		명세		
		전용연습실	㎡		공연장 등록번호 및 날짜				전시장 규모		㎡		
		전용사무실	㎡		객석수 또는 바닥면적(㎡)		석 ㎡		전용사무실		㎡		
		상근임직원 수	명		상근임직원 수		명		상근임직원 수		명		
		전임단원 수	명		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		명		전문인력 고용인원		명		
후원회원 수		명		후원회원 수		명		후원회원 수		명			
그 밖 의 명 세				그 밖 의 명 세				그 밖 의 명 세					

연 도	제 목	기 간	장 소 명 (객석 수, 전시면적)	일수 및 횟수	관객 수	유 료 관객 수
년						
년						

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
• 단체 지정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. 고유번호증 사본 1부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3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4. 최근 2년간(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·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)의 조직·인력 운영 현황 자료 1부 5. 사업계획서 1부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, 시·도)	→	심사 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, 시·도)	→	결재 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, 시·도)	→	지정서 발급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